

◆ 예능 분야 작품실적 기준 ◆

【 미술·공예·디자인분야 】

분야	평가항목	점수
작품전	1인 전시회(개인전)	150
	2인 전시회	100
	3~5인 전시회	50
	공인된 전시 초대작가 / 추천작가 작품	100 / 50
	공인된 국가기관 혹은 사단법인 협회전(기획전, 교류전)	50
	기타출품전(회원전, 기획전, 소단체의 초대작가전, 기타 단체전)	평가제외
공모전	공인된 공모전(국내외 동상 이상)	100
	공인된 공모전(특선)	50
기획	전시기획(국제인 경우만 인정)	50

※ 모든 항목에서의 최고점수는 150점으로 함 (추가점수 포함)
 ※ 엽서 형태의 리플렛은 인정불가하므로 도록 형태 증빙 제출 권장.
 ※ 국제작품전 및 국제공모전인 경우 평가점수에서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국제기타출품인 경우 제외함)

<작품전에 대한 기준>

- 1) 개인전, 2인전, 3인~5인 전시회의 경우, 총 작품 수의 2/3 이상이 미발표 작품으로 구성되어야 인정함
- 2) 공인된 전시 초대/추천작가 작품은 공인된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3) 공인된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의 개인부스전은 평가점수의 50%만 인정함
(상업적 목적인 아트페어의 개인 및 그룹 부스전은 제외)
- 4) 국제작품전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학회(협회)가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인정함
- 5) 공인된 국가기관, 사단법인 협회전(기획전, 교류전)의 경우, 참가국이 3개국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제작품전으로 인정함 (참가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 기타출품으로 인정함)

<공모전에 대한 기준>

- 1) 국제공모전은 OECD국가 중 전공분야별로 공인된 국제학회(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 공인된 공모전이라 함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등 최고상이 대통령 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기획에 대한 기준>

전시기획의 경우, 참가국이 10개국 이상의 국제규모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함

※ 개인전 발표 장소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1)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미술관'
(국립미술관 또는 (사)사립미술관협회 정회원 미술관)
- 2) 화랑 : (사)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전문화랑
- 3) 공공문화시설의 전시장으로서
 - 도/광역시급 이상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전시장
(예: 부산문화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산시민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 도/광역시급 이상의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시설
(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의 전시장
 - 그 외의 시설로서 전시기획을 담당(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하는 전문직 2명 이상이 상근하거나 학예연구의 기능을 갖춘 곳
- 4) 외국대사관 문화원 등의 전시 공간
- 5) 미술전문인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전시기획을 담당(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하는 전문직 1명 이상이 상근하는 화랑 및 대안공간
- 6) 정부/광역시 이상의 지자체 혹은 (조형예술분야와 관련된) 사단법인에서 주최/주관하는 예술행사/이벤트에 사용된 공간

* 해외전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

【 무용분야 】

평가항목	기준시간	점수
개인작품 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60분 이상	150
수상작품의 예술감독, 연출 안무		150
무용제 초청공연 및 단독 프로그램의 작품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100
2인 작품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70
3인 이상 작품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50
기타 무용분야 실적		평가제외
<p>※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국제 기타 무용분야 실적의 경우 제외함)</p> <p>※ 재공연 인정부분</p> <p>1) 외국에서 재공연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 인정</p> <p>2)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회 인정</p> <p>※ 개인작품 발표회에 대한 공연장규모 : 객석의 규모가 150석 이상의 규모</p> <p>다만, 주최단체가 국가기관 및 전국규모 이상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한 경우 야외공연도 실내공연과 동일하게 인정함</p> <p>※ 기준시간 및 공연장 규모 미달 실적인 경우 평가점수의 50% 반영함</p>		

【 연극영화분야 】

평가항목	기준시간	평가점수
공연된 작품의 기획, 제작, 창작각본, 연출	40분 이상	150
상영된 작품의 기획, 제작, 창작각본, 연출	20분 이상	150
공연 또는 영상 관련 행사에서 담당분야의 수상작품		150
뮤지컬 음악감독, 뮤지컬 작곡(전곡)	40분 이상	150
예술감독, 보컬코치	40분 이상	50
국내에서 공연 또는 상영된 작품의 기타 제작 참여 - 공연 :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의상디자인, 분장, 안무, 작사, 작곡, 음향, 무대감독, 드라마트루기, 번안, 각색, 번역 등 - 영상 : 프로덕션디자인, 촬영, 조명, 편집, 의상, 녹음, 음향, 음악, 분장, 각색, 번역 등		50
상영된 작품의 연기(주연)	60분 이상	150
공연된 작품의 연기(주연)	60분 이상	100
공연 또는 상영된 작품의 연기(조연)		50
<p>※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p> <p>※ 재공연 인정부분</p> <p>1) 외국에서 재공연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 인정</p> <p>2)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회 인정</p> <p>※ 개인작품발표에 대한 공연장규모 :</p> <p>1) 연극(뮤지컬) : 교외의 전문 공연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공연물(객석 수 제한 없음)</p> <p>2) 영화 : 교외의 전문 상영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상영작</p> <p>다만, 주최단체가 국가기관 및 전국규모 이상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한 경우 야외공연도 실내공연과 동일하게 인정함</p> <p>※ 기준시간 및 공연장 규모 미달 실적인 경우 평가점수의 50% 반영함</p>		

【 음악분야 】

분야별	평가항목	기준시간	점수
개인발표	독창회/독주회/작곡발표회	60분 이상	150
	앨범발표(정식 유통한 단독앨범/정규앨범리더앨범)	60분 이상 30분 이상 ~ 60분 미만	150 100
공동발표	듀오 연주(2인연주)		100
협연	독주악기의 전악장/그랜드 피스 협연 (다만, 국악은 10분 이상 협연 시 인정)		100
	독주악기의 단악장		40
	Two Pianos 및 2중주, 3중주 전악장 협연		50
실내악	3-10중주(기악, 국악)	전체프로그램	70
반주	기악·성악·국악 반주	전체프로그램	50
성악	오페라 주연(전막)		150
	오페라 조연(전막)		100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중 독창, 오페라 갈라콘서트		70
	3-4인 연주회	총 연주시간의 1/2이상	70
창작	오페라, 오라토리오, 미사, 무용음악, 창곡, 영상/공연 매체를 위한 음악 또는 사운드 디자인 작곡 발표	30분 이상	150
	관현악곡, 관(현)악 합주곡, 칸타타(4곡 이상)	15분 이상	150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악기 등의 개발 발표(논문 또는 공연)		150
	실내악곡, 합창곡, 연가곡(4곡 이상)	10분 이상	100
	기악독주곡, 어쿠스매틱 음악, 테입 음악	10분 이상	70
	가곡, 보컬곡	3분 이상	50
지휘	시향급 이상의 교향악단, 오페라단, 시립합창단, 국악 관현악단(시립이상)의 집박	전체프로그램	150
	전문 실내악단/전문합창단/집박	전체프로그램	70
기타	기타 음악분야 실적(공동음반CD/DVD발매 포함)		평가제외

※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국제 기타 음악분야 실적의 경우 제외함)

※ 재공연 인정부분

- 1) 국내 공연 후 외국에서 재공연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 인정
- 2)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회 인정

※ 공연장 규모(평가점수 100점 이상일 경우) : 공인된 150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교내 연주홀은 제외함)
다만, 국악 및 실용음악계열 교원의 경우 공인된 120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

※ 기준시간(전체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에 준함), 협연연주단체의 등급(수준), 및 공연장 규모 미달의 실적인 경우 평가점수의 50% 부과함.

<기타사항>

1. 음반발표는 공연실황레코딩, 스튜디오레코딩, 컴퓨터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작업을 담은 작품발표를 말하며 CD, LP, SACD, DVD-audio, Audio, file 등 다양한 매체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정식 유통되는 정규앨범을 말함. (기존에 업적을 재사용한 앨범은 표절로 인정함)
2.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연주의 비중(역할 및 연주곡 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함.
3. 개인발표의 경우 찬송가(찬송가 편곡포함)가 1/3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불인정함
4. 지휘의 경우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연주회 및 특별 연주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연주회 CD/DVD제출은 독주회에 한하며, 타 연주회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